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94
----------	-----

2016. 4. 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11. 17.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0. 회부)

2. 제안이유

-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 등의 필요성이 주창되어 왔으나 아직 그 실천력이 미비함.
- 특히, 교통환경에서 보도 및 횡단보도, 대중교통이용시설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시급한 가운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및 인증 등을 구체화하며 시장의 예산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유니버설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9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인증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위원회 및 디자인센터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별첨참조

5. 검토의견

□ 제안배경

- 이 조례안은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15년 11월 17일 우창윤 의원의 발의로 201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 입법공청회 개최 후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관 위원회의 변경을 요청¹⁾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임.

1)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400(2016.2.29.)호 ; 의원발의 의안 소관위원회 변경요청 의사담당관-1592(2016.3.16.)호 ; 의원발의 회부의안 소관상임위원회 재지정 및 회부

□ 주요내용

- 이 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타 조례 제·개정시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기본계획’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도시계획·교통·공원 등 각종 위원회 운영시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와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명시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과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배경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보편적 설계’로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로 함축할 수 있음.²⁾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베리어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 비교되는데, 베리어프리디자인은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한계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일반적 사회구성원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문제

2) 위키백과(ko.wikipedia.org) “유니버설디자인” 검색결과 인용

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말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례>

자료 : 디자인정책과 보도자료(2015.4.16., 2015.11.19)

□ 검토내용

1)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규정 부재

○ 이 조례안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별첨 2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교통수단 및 도로, 이동편의시설, 문화·예술·체육활용시설 등에 대해 설치기준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예정(2016.8.4.)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

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 디자인 사업 시행 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지향하고 있음³⁾).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가능한 시설·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없으나, 최근 제정(2016.2.3.)되어 시행예정(2016.8.4.)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정의⁴⁾되어 있고,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고령자, 교통약자, 주거약자’로 지칭되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범위 및 종류 등은 개별 법률로써 규정되고 있음.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4)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명	주요내용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방지 및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의무화함 • 고용 및 교육,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명시 • 차별금지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의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함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을 공원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의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시설기준을 명시함
<p>「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주거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의무건설 비율, 임대조건,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개선, 교통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설·설치기준, 교통이용정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행우선구역 지정,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규정함
<p>「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권의 보장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 사업 시행 및 지구 지정, 보행자전용길 지정 등을 규정함
<p>「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2.3. 제정 및 2016.8.4. 시행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지역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디자인사업 공청회 및 전문가 참여 명시, 추진협의체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시상 등을 명시함 •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법령상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처음 명시함 <p>※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p> <p>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p>

-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6개 지역(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동구)이며, 지자체별 유니버설디자인의 공통 적용범위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도로 및 교통시설, 공원” 등으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2) 기본이념(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⁵⁾을 인용·명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음.

<유니버설디자인 7대 원칙>

- ①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 ②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 ④ 정보 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 ⑤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 ⑥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⑦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5) Ronarld Mace,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College of Design, NCSU, Raleigh, North Carolina, USA

3) 시장의 역할(안 제4조)

-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는 현재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소관⁶⁾이며, 지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지시설·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국제세미나 및 직장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도시공간개선단”⁷⁾에서는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디자인위원회’,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디자인 업무에 대한 소관사무 상 디자인정책과의 유니버설디자인 업무와 차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⑦ 디자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
| 1. 디자인 정책 총괄 기획 | 10. 국내·외 디자인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
| 2. 디자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11.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발굴·추진 |
| 3.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2.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추진 |
| 4. 디자인 교육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 13. 서울색·서울서체 관리 및 활용 |
| 5.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 14.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및 건축물 미술품 관리 |
| 6.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5.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 7.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용에 관한 사항 | |
| 8.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9. 디자인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도시공간개선단)

④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
|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
|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
| 3.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4.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 5.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13.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6.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7.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 |
| 8.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및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 전원설비, 전기통신, 문화관광, 가로녹지,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유니버설디자인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할 것임.(별첨 3 참조)

○ 따라서, 시장의 책무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는 현재 도시교통본부(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안전총괄본부(보도블럭, 점자블럭, 보도턱, 도로, 교량, 터널), 푸른도시국(무장애 근린공원 및 산책로 조성), 주택건축국(공공건축물) 등에서도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중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조직의 설치보다 업무분장을 통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등(안 제6 ~ 8조)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시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다만 타부서에서 기 수립된 또는 수립 중에 있는 기본계획과의 관계 설정, 계획대상 및 수립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는 “도시디

자인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대상 및 내용면에서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대상이며, ‘도로 및 교통, 보행환경, 공원’ 등의 시설은 각기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조항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밖에도 시장은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의무화한 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확보를 조례로써 강제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예산의 의무확보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5)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안 제9 ~ 10조)

○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을 조례로써 규정할 경우, 모든 현장 및 시설에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기준 변경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행규칙 또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주요 고려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의 경우 의무적용 및 우선적용 대상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 이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10조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교통시설, 보행환경, 공원, 공공공간, 민간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⁸⁾제2항에 따라 “기존 설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관련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25명 중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운영 중임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충원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심사도 진행이 가능할 것임.

8)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현황>

합계	당연직	공간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색채 디자인	시각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 디자인	경관	조경	시의원
25	1	4	2	2	2	3	4	2	2	3

7)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안 제19조)

○ 이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위탁하기 보다는 기존의 서울디자인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6년 문화본부의 사업예산 중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사업예산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사업비로 2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바,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보여짐.

8)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지원 (안 제20조)

○ 이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의 추계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로 구체화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별첨 1]

□ 비용추계 결과

-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약 2억7백40만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1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제12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실태조사 (제19조제2항제7호)	132,398	-	-	-	-	132,398
	소계(b)	147,398	15,000	15,000	15,000	15,000	207,398
□ 총 비용(b-a)		147,398	15,000	15,000	15,000	15,000	207,398

[별첨 2] 관련법령별 적용대상 시설범위 및 종류 비교

관련법	적용대상 시설 범위 및 종류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법 제18조 및 영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서조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 하는 시설물에 한함)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법 제19조 및 영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종류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법 제7조) - 의무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p>「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별표 1)(법 제2조) - 의무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p style="margin-left: 20px;">ex) 출입문</p> <p style="margin-left: 40px;">가. 출입문의 통과 유효너비는 85센티미터(욕실 출입문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일 것</p> <p style="margin-left: 40px;">나.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법 제9조) - 의무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종류(별표 1, 별표 2)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차량, 광역전철 차량 •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2. 여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도시철도시설 역사, 철도시설 역사, 광역전철 역사 •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 정류장 • 공항시설, 항만친수시설 3.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도로부속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궤도,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넴기시설 -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법 제15조) - 단서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속도 저감시설 -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조명시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점자블록 ※ 시설의 구조 및 기준(별표 1)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8.4. 시행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의 종류(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물

[별첨 3]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 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